

2023년도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의거 2023년도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6일

경상남도지사

1 시험 일정

구 분	원 서 접 수	시험장소 공 고	필기시험 일 시	합격자 발표
상반기	3. 27.(월) ~ 3. 29.(수) *응시표 출력 4. 19. 이후	4. 19.(수)	4. 29.(토) 10:00 ~ 11:40	5. 9.(화)
하반기	6. 5.(월) ~ 6. 7.(수) *응시표 출력 6. 28. 이후	6. 28.(수)	7. 8.(토) 10:00 ~ 11:40	7. 18.(화)

※ 원서접수 시간은 (시작일) 09:00 ~ (마감일) 18:00 종료(기간 중 24시간 운영)

※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누리집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 「시험정보」에 공고

※ 확정 시험장소는 장소 공고일에 경상남도 누리집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 「시험정보」에
공고 및 본인 응시표 「필기시험장소」에서 확인

2 시험 과목

시 험 과 목	문항수	방 법	배 점
4 과목	80문항	100분	
①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	20		100점
② 야생동물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	20		100점
③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- 1종 :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- 2종 : 총기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	20	선택형 필기시험 (4지 택1형)	100점
④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	20		100점

※ 수렵면허시험은 문제 공개이므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.

- 가. 합격기준 :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
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- 나. 시험시간 : 100분(4과목 80문항)

※ 시험시작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(재입실 불가)

3 응시 자격

- 가. 주소지 관계없이 응시 가능

※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주소지(시·도) 응시 권장

- 나. 시험일 현재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1. 미성년자
2. 심신상실자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
5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(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응시자 주의사항 : 총기소지 결격사유(총포화약법 제13조)가 있으면 제1종(총기사용)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,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4 응시원서 접수 [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]

- 가. 접수방법

○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접수

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, 접수 관련 문의는 원서접수센터(☎1522-0660)로 연락하여야 합니다.

- 나. 접수시간 : 시작일 09:00 ~ 마감일 18:00(기간 중 24시간 운영)

다. 응시수수료 : 10,000원

-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신용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될 수 있으며,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라. 응시면허 종류 선택 : 제1종, 제2종

- 제1종 :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
- 제2종 :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

마.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

- (100% 반환기간) : 원서접수센터에서 직접 취소
- (50% 반환기간)
 - [별지1]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道 인사과 채용담당으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신청 ※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: 대리인 및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

구분	상반기	하반기	비고
100% 반환	3. 27.(월) ~ 4. 10.(월)	6. 5.(월) ~ 6. 19.(월)	원서접수센터 신청
50% 반환	4. 11.(화) ~ 4. 19.(수)	6. 20.(화) ~ 6. 28.(수)	우편 · 방문 신청

바. 인터넷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은 3.5cm×4.5cm, 해상도 100dpi 이상 증명 사진으로 등록하고, 시험당일 본인 확인 시 사용되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-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, **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**
-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.
-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 (응시수수료 결제 완료)을 하여야 하며, **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.**
-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.
- 응시표는 시험장소 공고일로부터 출력 가능하며(접수중은 접수일로부터 출력 가능),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합니다.

※ 인터넷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원서접수기간 중에 반명함판 증명 사진(3.5cm X 4.5cm)을 지참하고 시·군 수령면허발급 담당부서 또는 거주지 읍·면·동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5 응시자 유의사항

【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】

- 가. 「코로나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.
- 나.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
- 다. 시험당일 응시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라.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마. 응시자는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「코로나-19」 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부 방역지침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【일반사항】

- 가. 응시자는 시험당일 ①응시표, ②신분증, ③컴퓨터용 흑색사인펜, ④수정 테이프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(09:20)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- **응시표**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→마이페이지→응시표 출력
 - **신분증**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
 -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(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- ※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
- ※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됨
- 나.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다.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

합격이 무효가 되며,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- 라. 시험실에는 통신기기(휴대폰, 태블릿PC, 무선호출기, MP3플레이어, 이어폰, 스마트시계 등) 및 전자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녹화장비 등)를 소지할 수 없으며, 부정한 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.
- 마. 응시자는 공고문, 응시표, 답안지, 문제지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시험시간 개시 후 **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**하나, **재입실은 불가**합니다.
- 사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경상남도 누리집(<http://www.gyeongnam.go.kr>) 「시험정보」에 공고합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: 경상남도 환경정책과(☎055-211-6636)
 -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관한 사항 : 경상남도 인사과 채용담당(☎055-211-3527)

※ 수렵면허시험 **문제은행 자료**는 환경부 누리집(홈페이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환경부 누리집(<http://me.go.kr>) ⇒ 법령·정책 ⇒ 환경정책일반 ⇒ '수렵면허' 검색 ⇒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(2017.7월 기준)

【답안지 기재 및 표기】

- 가. 점수산출은 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은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○×◐●○◑○●○●②③

- 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

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.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(표기)하여야 합니다.
- ※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음
- 라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, 문제책 누락, 인쇄 상태 및 파손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해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 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, 부착된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함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- ※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사. 답안지는 훼손 ·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|||||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[별지 1]

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

신청인	응시번호		시험구분 (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하반기 수렵면허시험
	이 름		생년월일	
	연 락 처	(휴대폰)		(자택)
	응시수수료 (50%)	은행명		계좌 번호
	반환계좌	예금주		

【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】

- 수집항목 :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휴대폰, 지택), 수수료반환계좌(은행명, 예금주, 계좌번호)
 - 이용목적 : 수렵면허시험 접수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반환
 - 보유 및 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목적달성 시 까지
 - 동의거부 권리 : 거부 시 수렵면허시험 접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 하시겠습니까? 동의함 동의안함

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23년도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를 반환신청 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신청인 : 서명 또는 (인)

붙임 수수료 반환계좌(사본) 1부.

경상남도지사 귀하

※ 원서접수 취소에 따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)

- 1)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금액 전부
 - 2)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
 - 3)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 - 4)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: 이미 낸 수수료 전부

*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
- 1) 방 문 : 경상남도 인사과 채용담당(본관 2층)
☞ 방문신청은 기간 중 평일(월~금, 09:00 ~ 18:00)만 신청 가능, 12:00 ~ 13:00(점심시간) 불가
 - 2) 등기우편 : (51154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(사림동) 경상남도 인사과 채용담당
☞ 취소·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(취소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) 또는 경남 도청 인사과 채용담당으로 취소마감일까지 직접 방문,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우편 제출 시에는 발송 후 접수여부를 확인(☎ 055-211-3527)하시기 바랍니다.